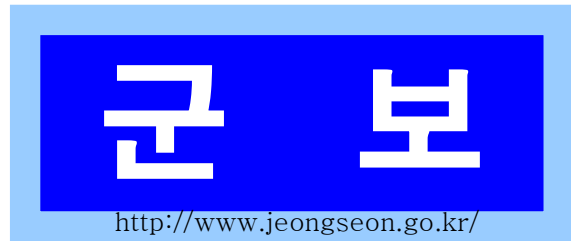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39호 2011. 4. 6. (수)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1-33호 사방지 지정 고시문1
- 정선군공시 제2011-34호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2
- 정선군고시 제2011-35호 예미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3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1-159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8
- 정선군공고 제2011-160호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21
- 정선군공고 제2011-162호 2010년 노인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28
- 정선군공고 제2011-185호 정선(사북) 군관리계획(시설:도로 및 주차장)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40
- 정선군공고 제2011-187호 정선 군관리계획(모평문화공원 및 사북3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입안·열람공고.....41
- 정선군공고 제2011-188호 2011년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안내 공고.....42
- 정선군공고 제2011-209호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46
- 정선군공고 제2011-210호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47
- 정선군공고 제2011-211호 2011년도 3월중 수시분(자동차,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54
- 정선군공고 제2011-217호 공공기록 신용정보 등록 예고서 공시송달공고.....55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고시 제2011-33호

사방지 지정 고시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야를 사방지로 지정하고자 이를 고시합니다.

2011. 3. 23.

정 선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면적 (ha)	사방종류	소유자
군	읍,면	리	지번					
정선	임계	고양	산70번지외2 0필지	임 외3	6,335,238	1.2193	사방댐	국(산림청) 외14

※ 필지별 내역은 사방지 지정명세서와 같음-정선군청 산림정책과 비치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3. 지정대상 : 사방사업 실행지

4. 지정년월일 : 2011. 3. 23.

5.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는 정선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목의 벌채, 토석, 나무 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6. 기타 사방지의 지정 구역 도면은 정선군 산림정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함.

정선군공시 제2011-34호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2011년 4월 27일 실시하는 강원도지사보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1. 4. 1.

정 선 군 수 인

사본의 종류	일반사본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고
선 거 인 명 부	64.02원 (A4용지 1매당 작성비용)	광학디스크(CD) 700원 + (23원×면수) A4용지기준	
부재자신고인명부	64.02원 (A4용지 1매당 작성비용)	광학디스크(CD) 700원 + (23원×면수) A4용지기준	

정선군고시 제2011-35호

예미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09-124(2009. 9. 9)호로 지정고시된 예미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04. 01.

정 선 군 수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단지종류 : 지역특화단지
- 명 칭 : 예미농공단지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72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107,770m², 변경 107,707m², 감) 63m²

2. 산업단지의 목적(변경없음)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전기업에 공장용지 적기공급
-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정선군의 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 정선군수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10. 12. 31
-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 업종 : ○ 식료품 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16), 펄프,종이및종이 제품제조업(1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 제품 제조업(33)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대분류	중 분 류	면적()	구성비(%)	비고
		계	75,649	100.0	
음식료품	C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25,106	33.2	
목재종이	C 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16),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17)	6,358	8.4	
기계	C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7,832	10.4	
지역특화업	C 제조업	식료품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기타 제품 제조업(33)	23,715	31.3	
기타제조업	C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33)	12,638	16.7	

6. 용도지역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07,770	감) 63	107,707	100.0	
계획관리지역	107,770	감) 63	107,707	100.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7,770	감) 63	107,707	100.0	
◦ 산업시설용지	75,649	-	75,649	70.2	14개 블록
◦ 공공시설용지	26,730	감) 63	26,667	24.8	
- 도로	15,253	감) 63	15,190	14.1	3개노선(1,116m)
- 소 공 원	2,244	-	2,244	2.1	
- 완 충 녹 지	9,233	-	9,233	8.6	
◦ 지원시설용지	5,391	-	5,391	5.0	
- 공동이용시설	2,053	-	2,053	1.9	관리사, 휴게시설, 위락시설
- 주차장	646	-	646	0.6	
- 폐수처리장	1,067	-	1,067	1.0	
- 오폐수저류지	1,625	-	1,625	1.5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3	1,116	15,190	-	-	-	1	155	2,982	2	961	12,208
중로	3	1,116	15,190	-	-	-	1	155	2,982	2	961	12,208

○ 도로계획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2	1	15	집산도로	155	880-2	839	일반도로			면적 2,982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484	848	877	일반도로			면적 6,175㎡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477	840-1	878	일반도로			면적 6,033㎡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노외주차장	1	신동읍 예미리 879번지	646	

3) 공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소공원	1	신동읍 예미리 876번지	2,244	

4) 녹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완충녹지	1	신동읍 예미리 859-2번지 일원	4,896	
완충녹지	2	신동읍 천포리 498번지 일원	175	
완충녹지	3	신동읍 천포리 187-3번지 일원	4,162	

5) 저류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저류시설	1	신동읍 천포리 498-5번지 일대	1,625	

6) 폐수종말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폐수종말처리시설	1	신동읍 예미리 844-2번지	1,067	

7)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① 상수도

구 분	용수량(㎥/일)	상수 공급계획	비 고
계	750	-	
공업용수	716	지방상수도(조동정수장 : 시설용량 3,300 / 일)시설 계통을 통해 공급	
생활용수	34		

② 하수도

구 분	용수량(㎥/일)	오·폐수 처리계획	비 고
계	512	-	
공장폐수	462	지구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자체처리	
생활오수	26		
지하수량	24		

8)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장은 설치하지 않으며, 폐기물처리전문업체를 통해 위탁처리
- 생활폐기물은 258.0kg/일, 사업장 폐기물 42.37톤/일

9) 에너지 및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① 전력

구 분	전력사용량(kW)	전력공급계획	비 고
전 력	1,490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② 통신

구 분	통신수요량(회선)	통신공급계획	비 고
통 신	73	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여유율 : 30%

③ 에너지

구 분	열수요량(Gcal/년)	에너지공급계획	비 고
에너지	72,545	저유황경유 또는 LNG로 공급계획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 공동이용시설은 업체의 입주 시기 및 규모, 인원 등을 감안하여 설치.
-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입주업체 가동 전 설치계획 임.

8. 정선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총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220,672,942	-	1,220,672,942	100.00	
도 시 지 역		42,582,840	-	42,582,840	3.48	
소 계		1,178,090,102	-	1,178,090,102	96.52	
관 리 지 역	계	223,746,462	-	223,746,462	18.32	
	관 리 지 역 (미 세 분)	-	-	-	-	
	계 획 관 리 지 역	100,924,318	-	100,924,318	8.27	
	생 산 관 리 지 역	27,570,708	-	27,570,708	2.25	
	보 전 관 리 지 역	95,251,436	-	95,251,436	7.80	
농 림 지 역		946,201,373	-	946,201,373	77.51	
자연환경보전지역		8,142,267	-	8,142,267	0.67	

2) 행정구역별(신동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19,703,095	-	119,703,095	100.0	
도 시 지 역		10,330,000	-	10,330,000	8.6	
소 계		109,373,095	-	109,373,095	91.4	
관 리 지 역	계	22,791,520	-	22,791,520	19.0	
	관 리 지 역 (미 세 분)	684	-	684	0.0	
	계 획 관 리 지 역	8,275,878	-	8,275,878	6.9	
	생 산 관 리 지 역	1,598,715	-	1,598,715	1.3	
	보 전 관 리 지 역	12,916,243	-	12,916,243	10.8	
농 림 지 역		84,648,575	-	84,648,575	70.7	
자연환경보전지역		1,933,000	-	1,933,000	1.6	

3) 농공단지내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7,770	감) 63	107,707	
계 획 관 리 지 역		107,770	감) 63	107,707	구역계 면적축소

※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증감 사항은 농공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임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②④	예 미 농공단지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강원도 정선군읍 신동읍 예미리 872번지 일원	107,770	감) 63	107,707	정선군고시 2009-124 호 (2009.9.9)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결 정 사 유
변경	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72번지 일원	변경 : 107,770㎡ → 107,707㎡, 감) 63㎡	농공단지내 일부(1필지) 토지 보상협의(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공탁이 불가한 실정임) 이루어지지 않아 구역계에서 제척하고, 위 토지 제척으로 인해 구역계 정형화를 위해 토지(1필지)를 구역계에서 제척하기 위해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다.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1) 교통시설 결정조서(변경)

가) 도로(변경)

(1)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3	1,116	15,190	-	-	-	1	155	2,982	2	961	12,208
중로	3	1,116	15,190	-	-	-	1	155	2,982	2	961	12,208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로번호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 계						1,116	-	-	-		-	
소 계 (중로2류)						155	-	-	-		-	
변경	중로	2	1	15	집산도로	155	880-2	839	일반도로		정선군고시 2009-124호 (2009.9.9)	
소 계 (중로3류)						961	-	-	-		-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484	848	877	일반도로		정선군고시 2009-124호 (2009.9.9)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477	840-1	878	일반도로		정선군고시 2009-124호 (2009.9.9)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중로 2-1	중로 2-1	·진입도로 가감속차선 면적감소 (감 63㎡)	·농공단지 진입도로의 가감속차로 중 토지보상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토지의 제척으로 인한 도로면적 변경 (폭원, 연장 변경없음)

나) 주차장(변경없음)

(1)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노외주차장	신동읍 예미리 879번지	646	-	646	정선군고시 2009-124호 (2009.9.9)	계획관리 지 역

2) 공간 시설(변경없음)

가) 녹지

(1)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신동읍 예미리 859-2번지 일원	4,896	-	4,896	정선군고시 2009-124 호 (2009.9.9)	계획관리 지 역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신동읍 천포리 498번지 일원	175	-	175	정선군고시 2009-124 호 (2009.9.9)	계획관리 지 역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신동읍 천포리 187-3번지 일원	4,162	-	4,162	정선군고시 2009-124 호 (2009.9.9)	계획관리 지 역

나) 공원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소공원	신동읍 예미리 876번지	2,244	-	2,244	정선군고시 2009-124 호 (2009.9.9)	계획관리 지 역

3)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유수지

(1)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유수지	저류시설	신동읍 천포리 498-5번지 일대	1,625	-	1,625	정선군고시 2009-124호 (2009.9.9)	계획관리지역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가) 환경기초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폐수종말처리장	신동읍 예미리 844-2번지	1,067	-	1,067	정선군고시 2009-124호 (2009.9.9)	계획관리지역

라.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1)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기정면적(㎡)	가 구		증감(㎡)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계		107,770	-	107,707	감)	63	
A	공장시설용지	75,649	신동읍 예미리, 천포리일원	75,649		-	
B	공공시설용지	22,888	신동읍 예미리, 천포리일원	22,825	감)	63	
C	녹 지 용 지	9,233	신동읍 예미리, 천포리일원	9,233		-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			
계		107,770	-	107,707	감)	63	
A	공 장 시 설 용 지	75,649	-	75,649		-	
	A1- 1 공 장 용 지	3,101	신동읍 예미리 856-3번지 일원	3,101		-	
	A1- 2 공 장 용 지	5,989	신동읍 예미리 852-1번지 일원	5,989		-	
	A1- 3 공 장 용 지	6,649	신동읍 예미리 851번지 일원	6,649		-	
	A1- 4 공 장 용 지	6,358	신동읍 예미리 844-1번지 일원	6,358		-	
	A1- 5 공 장 용 지	6,564	신동읍 예미리 872번지 일원	6,564		-	
	A1- 6 공 장 용 지	4,320	신동읍 예미리 874번지 일원	4,320		-	
	A1- 7 공 장 용 지	6,564	신동읍 예미리 845번지 일원	6,564		-	
	A1- 8 공 장 용 지	6,340	신동읍 천포리 196-2번지 일원	6,340		-	
	A1- 9 공 장 용 지	4,731	신동읍 예미리 864번지 일원	4,731		-	
	A1-10 공 장 용 지	5,996	신동읍 예미리 871번지 일원	5,996		-	
	A1-11 공 장 용 지	3,002	신동읍 예미리 871-2번지 일원	3,002		-	
	A1-12 공 장 용 지	4,880	신동읍 예미리 888번지 일원	4,880		-	
	A1-13 공 장 용 지	4,091	신동읍 천포리 198번지 일원	4,091		-	
	A1-14 공 장 용 지	7,064	신동읍 천포리 204번지 일원	7,064		-	
B	공 공 시 설 용 지	22,888	-	22,825	감)	63	
	B1-1 도 로	3,045	신동읍 예미리 878번지 일원	2,982	감)	63	
	B1-2 도 로	6,175	신동읍 예미리 871번지 일원	6,175		-	
	B1-3 도 로	6,033	신동읍 천포리 498번지 일원	6,033		-	
	B2-1 주 차 장	646	신동읍 예미리 879번지 일원	646		-	
	B3-1 소 공 원	2,244	신동읍 예미리 876번지 일원	2,244		-	
	B4-1 공 동 이 용 시 설	2,053	신동읍 예미리 880-1번지 일원	2,053		-	
	B5-1 폐수종말처리장	1,067	신동읍 예미리 844-2번지 일원	1,067		-	
	B6-1 오 폐 수 저 류 지	1,625	신동읍 천포리 498번지 일원	1,625		-	
C	녹 지 용 지	9,233	-	9,233		-	
	C1-1 완 충 녹 지	4,896	신동읍 예미리 859-2번지 일원	4,896		-	
	C1-2 완 충 녹 지	175	신동읍 천포리 498번지 일원	175		-	
	C1-3 완 충 녹 지	4,162	신동읍 천포리 187-3번지 일원	4,162		-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1 ~ A1-14 (공장시설용지)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천포리 일 원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및 별표20 제1호 자목의 건축물(공장)
			불허용도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의 사업 장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른	·150%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권 장)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방향과 일치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 ·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 내에 입지하는 건축물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 일치
		형 태 (권 장)	·외벽: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을 사용토록 하며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처리하도록 권장
		색 채 (권 장)	·주조색은 건축물의 벽면, 보조색은 벽면 일부와 부속시설 등, 강조색은 지붕 등에 사용 권장 - 주조색 : 색상(5YR 5GY), 명도(8이상), 채도(2미만) - 보조색 : 색상(5YR~5GY), 명도(6이상~8미만), 채도(4이하) - 강조색 : 색상(5YR~5GY), 명도(6미만), 채도(6이하)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정하되 정선군과 사전협의 권장
		건 축 선	·도로와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4-1 (공동이용시설)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일 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권 장)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방향과 일치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 ·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 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 일치
		형 태 (권 장)	·외벽: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을 사용토록 하며 전 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 리 하거나 유사하게 처리하도록 권장 ·지붕: 경사지붕(경사지붕 구배:3/10이상, 5/10이하 권장)
		색 채 (권 장)	·주조색은 건축물의 벽면, 보조색은 벽면 일부와 부속시설 등, 강조색은 지붕 등에 사용 권장 - 주조색 : 색상(5YR 5GY), 명도(8이상), 채도(2미만) - 보조색 : 색상(5YR ~ 5GY), 명도(6이상 ~ 8미만), 채도(4이하) - 강조색 : 색상(5YR ~ 5GY), 명도(6미만), 채도(6이하)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정하되 정선군과 사전 협의 권장
		건 축 선	·도로와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성명·주소 : 별첨 1

10. 지형도면 고시

- 명 칭 : 정선 예미농공단지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72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107,770m², 변경 107,707m², 감) 63m²
- 지형도면 : 게재생략

11. 관련도서 열람방법

- 장 소 : 정선군청 지역경제과(☎033-560-2352)
- 기 간 : 2011.03. ~2011.03.
- 열람시간 : 평일 09:00~18:00

[별첨 1]

정선 예미농공단지 [토지 및 권리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위치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종류	권리자	권리자 주소
계				110,151	107,770						
1	예미리	809-13	구거	2,016	2,016	정선군					
2	예미리	845-1	장	147	147	정선군					
3	예미리	856-5	도로	161	161	정선군					
4	예미리	871-1	장	990	990	정선군					
5	예미리	873-1	장	2,215	2,215	정선군					
6	예미리	892-75	하천	899	899	정선군					
7	천포리	206-1	답	28	28	정선군					
8	천포리	498-5	잡종	5,662	5,662	정선군					
9	천포리	194-10	잡종	848	848	정선군					
10	천포리	197-1	구거	372	372	정선군					
11	예미리	836	전	909	909	정선군					
12	예미리	836-1	도로	301	279	정선군					
13	예미리	838	전	1,035	1,035	정선군					
14	예미리	839	전	1,907	1,907	정선군					
15	예미리	840-1	전	1,210	1,210	정선군					
16	예미리	840-2	전	1,337	1,337	정선군					
17	예미리	841	전	235	235	정선군					
18	예미리	842	전	208	208	정선군					
19	예미리	843	전	389	389	정선군					
20	예미리	844-1	전	2,595	2,595	정선군					
21	예미리	844-2	전	2,595	2,595	정선군					
22	예미리	845	전	869	869	정선군					
23	예미리	846	답	1,075	1,075	정선군					
24	예미리	846-1	답	813	813	정선군					
25	예미리	847	답	327	327	정선군					
26	예미리	848	대지	509	509	정선군					
27	예미리	849	답	1,762	1,762	정선군					
28	예미리	850	답	1,759	1,759	정선군					
29	예미리	851	답	886	886	정선군					
30	예미리	852-1	답	3,572	3,572	정선군					
31	예미리	852-2	답	469	469	정선군					
32	예미리	852-3	답	1,206	1,206	정선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위치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종류	권리자	권리자 주소
33	예미리	853	전	330	330	정선군					
34	예미리	854	답	2,135	2,135	정선군					
35	예미리	855	답	766	766	정선군					
36	예미리	856-3	답	3,521	3,521	정선군					
37	예미리	857	답	1,175	1,175	정선군					
38	예미리	859-2	답	893	893	정선군					
39	예미리	863-1	답	666	666	정선군					
40	예미리	864	답	1,164	1,164	정선군					
41	예미리	865	전	1,921	1,921	정선군					
42	예미리	866-1	답	1,257	1,257	정선군					
43	예미리	868-1	답	1,190	1,190	정선군					
44	예미리	869-2	답	736	736	정선군					
45	예미리	869-6	답	688	688	정선군					
46	예미리	870	답	671	671	정선군					
47	예미리	871	답	3,972	3,972	정선군					
48	예미리	871-2	답	2,464	2,464	정선군					
49	예미리	872	답	6,212	6,212	정선군					
50	예미리	873	답	939	939	정선군					
51	예미리	874	답	2,489	2,489	정선군					
52	예미리	875	답	704	704	정선군					
53	예미리	876	답	982	982	정선군					
54	예미리	877	답	1,289	1,289	정선군					
55	예미리	878	답	787	787	정선군					
56	예미리	879	답	1,557	1,557	정선군					
57	예미리	880-1	답	2,208	2,208	정선군					
58	예미리	881-1	답	112	112	정선군					
59	예미리	882	답	2,350	2,350	정선군					
60	예미리	883	답	450	450	정선군					
61	예미리	884	답	397	397	정선군					
62	예미리	885	답	20	20	정선군					
63	예미리	886	답	783	783	정선군					
64	예미리	887	답	420	420	정선군					
65	예미리	888	답	2,629	2,629	정선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위치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종류	권리자	권리자 주소
66	예미리	889-1	답	718	718	정선군					
67	천포리	195	전	152	152	정선군					
68	천포리	197	전	492	492	정선군					
69	천포리	198	전	5,117	5,117	정선군					
70	천포리	202	전	268	268	정선군					
71	천포리	187-3	답	1,403	1,403	정선군					
72	천포리	196-1	대지	271	271	정선군					
73	천포리	196-2	창고	1,152	1,152	정선군					
74	천포리	196-3	전	4,597	4,597	정선군					
75	천포리	205-4	답	2,060	2,060	정선군					
76	천포리	210-8	전	48	48	정선군					
77	천포리	211-1	전	1,312	1,312	정선군					
78	천포리	212-1	전	1,525	1,525	정선군					
79	천포리	212-8	전	154	154	정선군					
80	예미리	852-8	답	397	397	정선군					
81	예미리	880-7	답	132	132	정선군					
82	예미리	809-2	도	707	68	건설교통부					
83	예미리	869-10	도	4	4	건설교통부					
84	예미리	869-4	도	228	228	건설교통부					
85	예미리	869-5	도	685	13	건설교통부					
86	예미리	869-8	도	93	93	건설교통부					
87	예미리	880-2	도	837	142	건설교통부					
88	예미리	889-6	도	122	54	건설교통부					
89	예미리	852-4	도	406	58	건설교통부					
90	예미리	866-9	답	88	88	건설교통부					

정선군공고 제2011-159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코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3. 16 ~ 4. 5
2.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별첨

붙 임 :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장학금”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체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④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이하“조례”라고 한다)”를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2조제2항”을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이하“조례”라고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조”를 “같은 조”로 하며, “각호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정선군공고 제2011-160호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의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3. 16.

정 선 군 수

1. 법적근거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
- 통합방위법 제7조(협의회의 통합·운영)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2. 개정이유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2009.5.21, 법률 제9675호) 및 동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827호)이 2009.11.22. 시행됨에 따라
-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보완·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함

3. 개정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안제1조)

- － 법 적용조항 『제17조 ⇒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조문 변경

나.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추가 (안제2조6~8호)

- － 국군 제536기무부대 정선군관계관, 국가정보원 정선군관계관, 정선군재향군인회장

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내용 변경(안제2조제5항1~3호)

- － 협의회 운영을 위한 분야별 간사는 총무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 : 자치행정과장으로, 경찰담당간사 : 정선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작전과장, 예비군 담당간사 :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작전과장으로 변경

라. 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 운영(안제2조제6항)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정선군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정선군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토록 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 560-2264, 팩스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1.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합방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선군의회 의장
2.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3. 정선경찰서장
4. 육군 제8087부대 1대대장
5. 정선소방서장
6. 국가정보원 정선군관계관
7. 국군 제536기무부대 정선군관계관
8. 정선군재향군인회장
9. 그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만료 전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 : 자치행정과장
2. 경찰담당간사 : 정선경찰서 정보보안과장
3.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작전과장

4.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동원과장

⑥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정선군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정선군민방위협의회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제3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와 관련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와 관련된 사항

5. 통제구역 설정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통합방위법

제5조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④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7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 ①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12. 지역 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지역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지역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⑤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⑦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1.17] [[시행일 2009.11.22.]]

정선군공고 제2011-162호

2010년 노인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에 따라 2010년도 노인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 3. 17

정 선 군 수

붙임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2부. 끝.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시설정보

- 시 설 명 : 뽕엘동산
 ■ 기 간 :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 시설장,담당자: 시설장: 000/ 담당자: 000
 (☎ 563-3843/Fax 563-3842)
 ■ 후원계좌번호 : 우체국, 200105-01-0*****, 예금주(뽕엘동산)
 농 협, 315045-51-1*****, 예금주(뽕엘동산)

◆후원금집행내역

(단위:원)

구분	법인명	시설명	총계	지정후원금	비지정 후원금 집행내역 (후원물품 제외)										비고
					소계	직접비		간접비		관공,정보비		별도기금등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노인	개인	뽕엘동산	19,984,721	6,650,000	13,334,721	12,379,941	93	954,780	7						

구 분	총계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수입내역	20,178,407	6,650,000	13,528,407
사용내역	19,984,721	6,650,000	13,334,721
잔 액	193,686	0	193,686

1. 후원금 수입 내역서

번호	후원일자	후원금 종류	후원자	금액
				20,178,407
1	2010-01-04	기타 후원금품	○ ○ ○	100,000
2	2010-01-06	기타 후원금품	○ ○ ○	100,000
3	2010-01-15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1,000,000
4	2010-01-15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20,000
5	2010-01-18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70,000
6	2010-01-21	지역사회 후원금품	○ ○ ○	150,000
7	2010-01-21	기타 후원금품	○ ○ ○	20,000
8	2010-01-25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100,000
9	2010-01-25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10	2010-01-25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100,000

11	2010-01-28	기타 후원금품	○ ○ ○	200,000
12	2010-01-29	기타 후원금품	○ ○ ○	100,000
13	2010-01-30	기타 후원금품	○ ○ ○	10,000
14	2010-02-04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15	2010-02-04	기타 후원금품	○ ○ ○	100,000
16	2010-02-11	기타 후원금품	○ ○ ○	250,000
17	2010-02-12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18	2010-02-15	기타 후원금품	○ ○ ○	200,000
19	2010-02-19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70,000
20	2010-02-22	기타 후원금품	○ ○ ○	20,000
21	2010-02-23	기타 후원금품	○ ○ ○	150,000
22	2010-02-25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100,000
23	2010-02-25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24	2010-02-25	기타 후원금품	○ ○ ○	10,000
25	2010-02-26	기타 후원금품	○ ○ ○	100,000
26	2010-03-01	기타 후원금품	○ ○ ○	200,000
27	2010-03-02	기타 후원금품	○ ○ ○	150,000
28	2010-03-02	기타 후원금품	○ ○ ○	300,000
29	2010-03-03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100,000
30	2010-03-06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31	2010-03-17	기타 후원금품	○ ○ ○	250,000
32	2010-03-17	기타 후원금품	○ ○ ○	200,000
33	2010-03-22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70,000
34	2010-03-22	기타 후원금품	○ ○ ○	20,000
35	2010-03-24	기타 후원금품	○ ○ ○	10,000
36	2010-03-25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100,000
37	2010-03-25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38	2010-03-31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100,000
39	2010-03-31	기타 후원금품	○ ○ ○	100,000
40	2010-04-02	기타 후원금품	○ ○ ○	200,000
41	2010-04-04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42	2010-04-11	기타 후원금품	○ ○ ○	200,000
43	2010-04-20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70,000
44	2010-04-21	기타 후원금품	○ ○ ○	250,000
45	2010-04-22	기타 후원금품	○ ○ ○	20,000
46	2010-04-26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100,000
47	2010-04-26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48	2010-04-27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100,000
49	2010-04-30	기타 후원금품	○ ○ ○	100,000
50	2010-05-03	기타 후원금품	○ ○ ○	10,000

51	2010-05-03	기타 후원금품	○ ○ ○	200,000
52	2010-05-05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53	2010-05-06	기타 후원금품	○ ○ ○	200,000
54	2010-05-09	기타 후원금품	○ ○ ○	220,000
55	2010-05-10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2,750,000
56	2010-05-17	기타 후원금품	○ ○ ○	250,000
57	2010-05-24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100,000
58	2010-05-24	기타 후원금품	○ ○ ○	20,000
59	2010-05-25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100,000
60	2010-05-25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61	2010-05-27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70,000
62	2010-05-28	기타 후원금품	○ ○ ○	10,000
63	2010-06-13	기타 후원금품	○ ○ ○	200,000
64	2010-06-15	기타 후원금품	○ ○ ○	250,000
65	2010-06-19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66	2010-06-22	기타 후원금품	○ ○ ○	20,000
67	2010-06-24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70,000
68	2010-06-25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100,000
69	2010-06-25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70	2010-06-25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2,700,000
71	2010-06-28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100,000
72	2010-06-28	기타 후원금품	○ ○ ○	10,000
73	2010-07-05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74	2010-07-06	기타 후원금품	○ ○ ○	10,000
75	2010-07-15	기타 후원금품	○ ○ ○	200,000
76	2010-07-22	기타 후원금품	○ ○ ○	250,000
77	2010-07-25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70,000
78	2010-07-26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79	2010-07-28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100,000
80	2010-08-05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81	2010-08-19	기타 후원금품	○ ○ ○	250,000
82	2010-08-25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100,000
83	2010-08-25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84	2010-08-27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70,000

85	2010-08-31	기타 후원금품	○ ○ ○	10,000
86	2010-09-03	기타 후원금품	○ ○ ○	230,000
87	2010-09-06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88	2010-09-15	기타 후원금품	○ ○ ○	200,000
89	2010-09-20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70,000
90	2010-09-23	기타 후원금품	○ ○ ○	530,000
91	2010-09-27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100,000
92	2010-09-27	기타 후원금품	○ ○ ○	10,000
93	2010-10-05	기타 후원금품	○ ○ ○	10,000
94	2010-10-06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95	2010-10-15	기타 후원금품	○ ○ ○	200,000
96	2010-10-18	기타 후원금품	○ ○ ○	450,000
97	2010-10-25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50,000
98	2010-10-25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100,000
99	2010-10-26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70,000
100	2010-11-01	기타 후원금품	○ ○ ○	200,000
101	2010-11-05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102	2010-11-10	기타 후원금품	○ ○ ○	200,000
103	2010-11-21	기타 후원금품	○ ○ ○	430,000
104	2010-11-24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70,000
105	2010-11-25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106	2010-11-29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100,000
107	2010-11-30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1,200,000
108	2010-11-30	기타 후원금품	○ ○ ○	10,000
109	2010-12-06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110	2010-12-21	기타 후원금품	○ ○ ○	450,000
111	2010-12-24	민간단체 보조금품	○ ○ ○	70,000
112	2010-12-26	기타 후원금품	○ ○ ○	100,000
113	2010-12-26	기타 후원금품	○ ○ ○	100,000
114	2010-12-27	기타 후원금품	○ ○ ○	50,000
115	2010-12-30	기타 후원금품	○ ○ ○	10,000
116	2010-12-31	기타 후원금품	○ ○ ○	68,407

2. 후원품 수입내역서

번호	후원일자	후원품 종류	후원자	내역	품명	수량	단위
1	2010-09-01	기타 후원금품	○ ○ ○	쌀	쌀	6	개
2	2010-11-20	기타 후원금품	○ ○ ○	김장비	배추	500	개
3	2010-11-20	기타 후원금품	○ ○ ○	김장비	무우	100	개
4	2010-11-20	기타 후원금품	○ ○ ○	김장비	고추가루	4	BOX
5	2010-12-20	기타 후원금품	○ ○ ○	난방비	등유,경유	1250	리터

3. 후원금 사용내역서

번호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 액	산출기 준	비 고	지정여 부	구 분
			19,984,721				
1	2010-01-20	한우사태	120,000		생계비-시설		
2	2010-01-20	부식 외	134,840		생계비-시설		
3	2010-01-20	약품비	48,500		의료비-시설		
4	2010-01-22	음료수	7,500		특별급식비-시설		
5	2010-01-23	생활용품비	11,000		수용기관경비-시설		
6	2010-01-25	부식 외	104,450		생계비-시설		
7	2010-01-25	간식	37,030		특별급식비-시설		
8	2010-01-28	사무용품	14,600		수용기관경비-시설		
9	2010-01-29	유류대	21,871		차량비-시설		
10	2010-01-29	돈육 외	133,200		생계비-시설		
11	2010-02-02	사무용품	15,000		수용비및수수료-시설		간접비
12	2010-02-03	유류대	13,999		차량비-시설		
13	2010-02-03	부식	404,000		생계비-시설		
14	2010-02-03	부식	79,350		생계비-시설		
15	2010-02-03	과일	52,000		특별급식비-시설		
16	2010-02-05	유류대	13,951		차량비-시설		
17	2010-02-05	생활용품	30,050		수용기관경비-시설		
18	2010-02-06	생활용품	42,150		수용기관경비-시설		

19	2010-02-08	부식	95,750		생계비-시설		
20	2010-02-19	우유	2,560		특별급식비-시설		
21	2010-02-19	할인	-420		특별급식비-시설		
22	2010-02-22	물티슈 외	128,400		수용기관경비-시설		
23	2010-02-26	진료,약품비	500,000		의료비-시설		
24	2010-03-03	간식	211,750		수용기관경비-시설		
25	2010-03-04	쌀, 잡곡	450,000		생계비-시설		
26	2010-03-07	부식	466,960		생계비-시설		
27	2010-03-08	호출 벨	300,000		수용비및수수료-시설		간접비
28	2010-03-09	생활용품	226,950		수용기관경비-시설		
29	2010-03-11	부식	100,000		생계비-시설		
30	2010-03-11	약품	220,000		의료비-시설		
31	2010-04-02	사무용품	140,280		수용기관경비-시설		
32	2010-04-02	빵류	56,800		특별급식비-시설		
33	2010-05-01	TV	190,000		수용비및수수료-시설		간접비
34	2010-05-01	TV	190,000		수용비및수수료-시설		간접비
35	2010-05-01	한우	54,510		생계비-시설		
36	2010-05-01	휴지 외	159,930		수용기관경비-시설		
37	2010-05-01	간식류	8,100		특별급식비-시설		
38	2010-05-01	빵류	25,000		특별급식비-시설		
39	2010-05-18	식대	18,500		생계비-시설		
40	2010-05-18	부식	320,000		생계비-시설		
41	2010-05-18	간식류	15,210		특별급식비-시설		
42	2010-05-20	유류대	106,000		차량비-시설		
43	2010-05-22	돈육	35,000		생계비-시설		
44	2010-05-22	한우	90,000		생계비-시설		
45	2010-05-22	생활용품	53,800		수용기관경비-시설		
46	2010-05-22	간식류	12,000		특별급식비-시설		
47	2010-05-26	과일류	104,000		특별급식비-시설		
48	2010-05-26	과일류	50,000		특별급식비-시설		
49	2010-05-27	부식	120,000		생계비-시설		
50	2010-05-27	부식	80,000		생계비-시설		

51	2010-05-27	부식,간식	130,000		생계비-시설		
52	2010-05-28	유류대	901,000		차량비-시설		
53	2010-05-28	장구 외 4종	2,050,000		교육재활사업비-시설	지정	
54	2010-05-28	아리랑공연강사비	70,000		교육재활사업비-시설	지정	
55	2010-05-30	모찌떡	35,000		생계비-시설		
56	2010-05-30	참쌀	150,000		생계비-시설		
57	2010-06-15	한우	100,000		생계비-시설		
58	2010-06-23	아리랑공연강사비	70,000		교육재활사업비-시설	지정	
59	2010-06-24	의류	9,800		피복비-시설		
60	2010-07-05	아리랑공연강사비	70,000		교육재활사업비-시설	지정	
61	2010-07-09	문구류 외	44,900		수용비및수수료-시설		간접비
62	2010-07-09	부식	46,500		생계비-시설		
63	2010-07-09	닭 외	183,000		생계비-시설		
64	2010-07-09	생활용품	8,000		수용기관경비-시설		
65	2010-07-09	간식류 외	45,500		특별급식비-시설		
66	2010-07-14	유류대	114,000		차량비-시설		
67	2010-07-20	유류대	105,000		차량비-시설		
68	2010-07-21	등유외 /외상대	234,000		연료비-시설		
69	2010-07-22	불고기	163,000		생계비-시설		
70	2010-07-31	수박 외	550,000		특별급식비-시설		
71	2010-08-13	티셔츠,슬리퍼	13,880		피복비-시설		
72	2010-08-13	호빵 외	78,830		특별급식비-시설		
73	2010-08-19	국수 외	94,760		생계비-시설		
74	2010-08-20	세제류	211,900		수용기관경비-시설		
75	2010-08-24	세탁기	2,700,000		수용비및수수료-시설	지정	
76	2010-09-06	사무용품	99,500		수용비및수수료-시설		간접비
77	2010-09-06	생활용품	63,020		수용기관경비-시설		
78	2010-09-07	유류대/병원이송 외	100,000		차량비-시설		
79	2010-09-10	아리랑공연강사비	70,000		교육재활사업비-시설	지정	
80	2010-10-02	진료,약품비	904,840		의료비-시설		
81	2010-10-04	세제류 외	137,750		수용기관경비-시설		
82	2010-10-05	아리랑공연강사비	70,000		교육재활사업비-시설	지정	

83	2010-10-08	한우 양지 외	119,000		생계비-시설		
84	2010-10-21	아리랑공연강사비	70,000		교육재활사업비-시설	지정	
85	2010-10-22	유류대	103,000		차량비-시설		
86	2010-10-26	한우 양지 외	70,950		생계비-시설		
87	2010-10-29	돼지고기	30,000		생계비-시설		
88	2010-10-29	고추장	55,000		생계비-시설		
89	2010-10-29	야채	4,000		수용기관경비-시설		
90	2010-10-29	빵류(95,400-할인)	95,000		특별급식비-시설		
91	2010-10-29	아리랑공연강사비	70,000		교육재활사업비-시설	지정	
92	2010-11-01	부식	120,450		생계비-시설		
93	2010-11-04	의류	23,600		피복비-시설		
94	2010-11-05	사무용품	106,080		수용비및수수료-시설		간접비
95	2010-11-05	한우양지	71,800		생계비-시설		
96	2010-11-05	한일청과	66,000		특별급식비-시설		
97	2010-11-08	세제류	390,000		수용기관경비-시설		
98	2010-11-09	빵류	31,300		특별급식비-시설		
99	2010-11-09	빵류	2,700		특별급식비-시설		
100	2010-11-11	풍선 외	76,800		교육재활사업비-시설		
101	2010-11-11	아리랑공연강사비	70,000		교육재활사업비-시설	지정	
102	2010-11-14	유류대/교통비	88,000		차량비-시설		
103	2010-11-15	설탕	8,500		생계비-시설		
104	2010-11-20	한우불고기	200,000		생계비-시설		
105	2010-11-29	호빵 외	148,970		특별급식비-시설		
106	2010-11-29	떡	80,000		특별급식비-시설		
107	2010-11-29	아리랑공연강사비	70,000		교육재활사업비-시설	지정	
108	2010-12-02	참기름 외	96,350		생계비-시설		
109	2010-12-02	영양15곡 외	37,000		생계비-시설		
110	2010-12-03	김장 부식	380,000		생계비-시설		
111	2010-12-23	부식비	54,800		생계비-시설		
112	2010-12-23	부식비	195,870		생계비-시설		
113	2010-12-23	과자,음료	19,500		특별급식비-시설		
114	2010-12-25	문구류	9,300		수용비및수수료-시설		간접비
115	2010-12-25	아리랑공연강사비	70,000		생계비-시설	지정	
116	2010-12-25	한우등뼈	60,000		생계비-시설		
117	2010-12-25	생활용품	252,000		수용기관경비-시설		
118	2010-12-31	심야전기요금	1,200,000		연료비-시설	지정	

4. 후원품 사용내역서

번호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수량	단위
1	2010-09-10	쌀	조리실	6	개
2	2010-12-01	김장비	조리실	4	BOX
3	2010-12-01	김장비	조리실	500	개
4	2010-12-01	김장비	조리실	100	개
5	2010-12-20	난방비	요양실	1250	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시설정보

- 시설 명 : 정선군노인요양원
- 기 간 :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 시설장,담당자: 시설장: 000/ 담당자: 000
(☎ 562-5566/Fax 562-7016)
- 후원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225-01-2***** , 예금주(정선군노인요양원)
신용협동조합, 04008-12-0***** , 예금주(정선군노인요양원)

◆후원금집행내역

구분	법인명	시설명	총계	지정후원금	비지정 후원금 집행내역 (후원물품 제외)										비고
					소계	직접비		간접비		관공, 정보비		별도 기금등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노인	원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정선군 노인요양원	46,873,451	44,409,561	2,463,890	2,163,890	88	300,000	12						

구 분	총계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수입내역	53,277,680	45,309,951	7,967,729
사용내역	46,873,451	44,409,561	2,463,890
잔 액	6,404,229	900,390	5,503,839

1. 후원금 수입 내역서 : 779건 / 53,277,680원
2. 후원품 수입내역서 : कु 등 497건

3. 후원금 사용내역서

번호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액(원)	비 고	지정 여부	구분
계			46,873,451			
1	2010-02-04	1월분 전기요금	1,149,570	운영비-공공요금		
2	2010-02-05	시간제근무	250,000	일용잡급 - 시설		
3	2010-02-23	2월 장기봉사자 교통비 지급	100,000	기타운영비 - 시설		
4	2010-03-25	3월 장기봉사자 교통비	100,000	기타운영비 - 시설		
5	2010-04-23	4월 장기봉사자 교통비	100,000	기타운영비 - 시설		
6	2010-04-30	시간제 요양보호사 4월 급여	750,000	일용잡급 - 시설		
7	2010-05-06	주방도우미	150,000	일용잡급 - 시설		
8	2010-05-06	4월 전기요금(산업용)	66,010	운영비-공공요금	비지정	직접비
9	2010-05-06	4월 전기요금(심야전력)	1,075,110	운영비-공공요금	비지정	직접비
10	2010-05-06	4월 전기요금(일반용)	1,022,770	운영비-공공요금	비지정	직접비
11	2010-05-25	5월 장기봉사자 교통비	100,000	기타운영비 - 시설		
12	2010-06-09	그랜드 스타렉스 휠체어리프트 7인승 구입	33,998,800	시설비-자산취득비		
13	2010-06-15	마스크팩 외2종	8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14	2010-06-25	6월 장기봉사자 교통비 지급	100,000	기타운영비 - 시설		
15	2010-06-28	화분 외 1종	91,000	수용비및 수수료 - 시설		
16	2010-06-28	뱅갈고무나무 외 1종	209,000	수용비및 수수료 - 시설		
17	2010-07-07	마스크 팩 외 2종	8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18	2010-07-13	6월 원예치료강사비	140,000	일용잡급 - 시설		
19	2010-07-23	7월 장기봉사자 교통비	100,000	기타운영비 - 시설		
20	2010-07-29	압화장식부채 30세트 구입	27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21	2010-07-29	7월 원예치료 강사비	140,000	일용잡급 - 시설		
22	2010-08-23	얼굴마사지 마스크팩 재료구입	8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23	2010-08-25	8월 원예치료 강사비	140,000	일용잡급 - 시설		
24	2010-08-25	원예치료 재료 덴파레외2종	39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25	2010-08-25	8월 장기봉사자 교통비	100,000	기타운영비 - 시설		
26	2010-09-13	9월 원예치료 강사비	140,000	일용잡급 - 시설		
27	2010-09-13	어르신 프로그램사업비(압화열쇠고리)	27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28	2010-09-20	마스크팩 외 2종 구입	8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29	2010-09-24	9월 장기봉사자 황상호(토마스)교통비	100,000	기타운영비 - 시설		
30	2010-09-29	웃음치료 교육 강사비	600,000	일용잡급 - 시설		
31	2010-09-29	2010년강원랜드직원역량강화사업 웃음치료교육현수막 제작비	40,000	수용비및 수수료 - 시설		

32	2010-09-29	2010년강원랜드직원역량강화사업 웃음치료교육간식비	49,400	특별급식비 - 시설		
33	2010-10-05	점심식대 산채비빔밥	356,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34	2010-10-05	콘칩외6종	49,4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35	2010-10-05	버스대여료	30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36	2010-10-05	우의11벌구입	2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37	2010-10-05	주차료(트럭1대,버스1대,소형승용차1대)	17,5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38	2010-10-05	현수막 제작비	5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39	2010-10-05	딸기우유100개	7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40	2010-10-05	팔빵 100개 구입	7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41	2010-10-08	원예치료 재료 구입	18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42	2010-10-20	강원랜드프로그램사업비 얼굴마사지재료비	8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43	2010-10-21	강원랜드 직원역량강화사업 호스피스교 육 강사비 정순빈(로사)수녀	250,000	일용잡급 - 시설		
44	2010-10-25	강원랜드프로그램공모사업비 10월원예치료강사료	140,000	일용잡급 - 시설		
45	2010-10-25	10월 장기봉사자 교통비	100,000	기타운영비 - 시설		
46	2010-10-29	팬션대여료	24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47	2010-10-29	주방보조 아르바이트(2010.10/26-29일)	200,000	일용잡급 - 시설		
48	2010-10-29	머루포도외25종	149,87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49	2010-10-29	수수깁외7종	62,73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50	2010-10-29	점심식대(2일)	30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51	2010-10-31	강원랜드 프로그램사업비 얼굴마사지재료비	8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52	2010-11-08	베고니아 외 4종 구입	285,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53	2010-11-15	원예치료 재료비	32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54	2010-11-23	강원랜드프로그램공모사업비 11월원예치료강사비	280,000	일용잡급 - 시설		
55	2010-11-25	11월 장기봉사자(황상호)교통비	100,000	기타운영비 - 시설		
56	2010-11-30	어르신 얼굴마사지 마스크팩 외 2종 구입	8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57	2010-12-03	산내량마을직원걸어서출근합시다 "스티커발급추천포상(3명)	300,000	기타후생경비 - 시설	비지정	간접비
58	2010-12-13	어르신 얼굴마사지 재료구입	8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59	2010-12-13	원예치료 재료구입	35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60	2010-12-22	원예치료 강사비	140,000	일용잡급 - 시설		
61	2010-12-24	12월 장기봉사자(황상호)교통비	100,000	기타운영비 - 시설		
62	2010-12-30	식당 꽃꽂이재료구입	61,291	수용비및 수수료 - 시설		

4. 후원품 사용내역서 : 간식 497건 제공

정선군공고 제2011-185호

정선(사북) 군관리계획(시설:도로 및 주차장)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정선(사북) 군관리계획(시설:도로 및 주차장)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3. 24.

정 선 군 수

1. 정선(사북) 군관리계획(시설:도로 및 주차장)결정(변경)(안)

1)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5-7번지 일원

2) 군관리계획(시설:도로 및 주차장)결정(변경)(안)

○ 군계획시설(도로) : 기정) 소3-15호선 L=426m B=6m ⇨ 변경) 소1-20호선 L=450m B=10m

○ 군계획시설(주차장) : 신설) A=1,419m²

3) 재열람·공고 사유 :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구역경계선 변경에 따른 재열람·공고

3.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4.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2011.03.24. ~ 2011.04.07. 까지)

5.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열람 기간내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서면제출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건축과(☎560-21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187호

**정선 군관리계획(모평문화공원 및 사북3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열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모평문화공원 및 사북3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3. 25.

정 선 군 수

1. 열람목적 : 군계획시설 모평문화공원 폐지 및 사북3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C6구역 보차혼용통로 일부 제척)
2. 정선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
 - 가. 위 치
 - 모평문화공원 폐지 :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6번지 일원
 - 사북3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 정선군 사북읍 사북7리 317-86번지 일원
 -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 폐지 : 모평문화공원 폐지 (A=129,800㎡)
 - 사북3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 C6구역 보차혼용통로 일부변경(L=16m B=3m 제척)
3.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정선읍사무소, 사북읍사무소
4.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2011.03.25 ~ 2011.04.08)
5.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열람 기간내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서면제출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건축과(☎560-2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188호

2011년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안내 공고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제품 홍보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1. 3. 28

정 선 군 수

2011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안내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제품 홍보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도내 중소기업(20개 기업이내)
- 지원대상 : 2011년도 신규 제작 홈페이지
- 지원내용 : 홈페이지 제작 지원 (호스팅비 : 300,000원, 2차년도 이후 132,000원 자부담).

고급기능 설치시 추가부담 있음(붙임1,2 참조).

- 지원방법 : 지원업체 선정 후 용역업체를 통한 일괄제작.

□ 신청접수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 2011. 4. 11(월) 09시 ~ 2011. 4. 15(금) 18시
- 신청방법 : 춘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chunchoncci.korcham.net>)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신청순서에 따라 선정. 단 선정제외 사유 해당 시 예비순위 업체 선정.

※ 선정제외 사유

- 강원도 소재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 2011년도에 신규 제작하는 홈페이지가 아닌 경우(리뉴얼 포함)
- 타 기관, 타 부서에서 지원받은 경우

□ 향후일정

- 선정기업 발표 : 2011. 4. 20(수) 09시
- 발표 장소 : 춘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chunchoncci.korcham.net>)
-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개최예정, 선정기업은 효율적인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필히 참석 바람(일시 추후 공지)

- 문의 : 춘천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지원센터 (033) 251-2673

2011. 3. 28.

춘천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지원센터장

붙임 1

홈페이지 제작 지원내용

구 분	상세내용	기타
홈페이지 제작	◦ 제작페이지 15페이지 이내 ◦ 로고 및 약도 제작(새로 제작) ◦ 구성 및 메인플래쉬 이미지 ◦ 배너 제작(5개 이하) ◦ 텍스트+이미지 위주 페이지 구성	
웹호스팅	◦ 하드용량 : 1G ◦ 트래픽 : 30G/월 ◦ 웹메일 : 1개 ◦ 프로그램 - 게시판, 갤러리, 폼메일, 쇼핑몰 제공	2차년도 이후 132,000원/년 수혜기업 부담
유지보수	◦ 연간 무료 유지보수 범위(25점 이내) - 텍스트 페이지 : 2점 - 이미지 + 텍스트 페이지 : 4점 - 신규 페이지 추가 : 6점 - 메뉴 삭제 : 3점 - 메뉴 추가 : 7점 - 이미지 교체 : 3점	3차년도 이후 실비 발생분 수혜기업 부담
관리자모드	◦ 홈페이지 기본설정 ◦ 홈페이지 디자인 ◦ 프로그램설정 - 회원관리, 게시판, 갤러리, 방명록 카다로그, 쇼핑몰 관리 등 ◦ 이벤트 관리 - 쿠폰, 응모, 방문자 이벤트 등 ◦ 마케팅 지원 등	-
도메인	◦ 국제도메인 또는 kr 도메인중 1개 선택하여 등록	2차년도 이후 17,600원/년 수혜기업 부담

붙임 2

고급 기능 선택(수혜기업 자부담)

구 분	상세내용	비 고
전자결제 (PG)	◦ 쇼핑몰 운영을 위한 카드 결제 지원 - LG U+ 등록비 <u>20만원</u> - 카드수수료 (3.25%, 부가세 별도)	
문자발송 (SMS)	◦ 회원대상 문자 발송 서비스(선불충전) - 200건(6,000원) - 400건(10,000원) - 1,300건(30,000원) - 2,400건(50,000원)	
쇼핑몰 회원 가입 / 관리	◦ 회원 가입 및 관리 기능 도입시에는, SSL보안서버 필수(정보통신망법) - <u>55,000원/년</u> ◦ 회원가입시 실명인증 필수 - <u>33,000원/월</u>(기본2,000건, 초과 20원/건)	
모바일 홈페이지	◦ QR코드를 통한 스마트폰용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2차 도메인 제공 - <u>11만원</u> - 예) http://m.gwmart.co.kr	2차년도 이후 13,200원/년 수혜기업 부담

정선군공고 제2011-209호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공직선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4월 27일 실시하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4. 4.

정 선 군 수

1. 열람기간

2011년 4월 13일부터
2011년 4월 15일까지 } 3일간(공휴일에 불구함)

2. 열람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열람은 열람시간 제한 없음)

3. 열람장소

장 소 명	소 재 지	비 고
정선읍사무소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31(봉양리 210-1)	
고한읍사무소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고한리 125-4)	
사북읍사무소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65(사북리 317-26)	
신동읍사무소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예미리 759)	
화암면사무소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화암리 393-1)	
남 면사무소	정선군 남면 칠현로 80(문곡리 103-1)	
여량면사무소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여량리 305-3)	
북평면사무소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6(북평리 222-2)	
임계면사무소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5(송계리 773-1)	

4.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주소 : <http://www.jeongseon.go.kr>

5. 인터넷 열람방법

정선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거인명부 열람 배너창의 선거인명부 열람을 클릭하시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210호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4. 1.

정 선 군 수

1. 조례명 :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우리군의 출산정책으로 적극적·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 양육비 등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출산 육아용품비 지원을 법제화하여 체계적인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 세 자녀 이상”을 “출생아”로 하고, 둘째아 양육비 지급기간을 명시함.
(제명, 제2조 2호, 제4조 ②항, 제12조 ①항)
- 출생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첫째아, 둘째아 중 한명이라도 사망시에는 지원 기준일 당시의 생존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정한다”를 추가한다.
(안제2조 ②항)
- 정선군양육비 등 지원 시책 운영위원회의 운영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를 신설함(안 제6조)
-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출산육아용품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군수는 양육비외에 필수적으로 양육에 소요되는 출산육아용품 등을 구입하도록 출생아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를 신설함 (안 제13조의 2)

4. 의견 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8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전화 560-2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가.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안) 1부.

나. 관계법령발췌서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10조, 제23조 규정에 의하여”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원대상”이란 양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군민의 자녀를 말한다. 다만, 첫째아, 둘째아 중 한명이라도 사망시에는 지원기준일 당시의 생존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요건 및 대상) ①양육비 등 지원은 지원기준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지원대상은 군 관내에서 출생한 자녀에 한하고,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선군양육비등지원시책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1인”을 “1명”으로, “12인”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2. 주민생활지원과장
3. 자치행정과장

4. 보건소장

5. 정선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6. 저출산·양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⑧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위원회”를 각각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녀 1명 당 지원액은 연간 300만원 범위 안에서 예산, 물가상승률, 출산실태, 인구증감률, 군민의 평균적인 양육비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최종 결정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 대신 지원액에 상당하는 육아용품 등 물품을 구입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원기간은 둘째 자녀는 지원기준일로부터 1년, 셋째 자녀 이상은 지원기준일로부터 만 12세 까지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군 관내를 떠나 주소지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그 때부터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출산육아용품 등 지급) 군수는 양육비 외에 필수적으로 양육에 소요되는 출산육아용품 등을 구입하도록 출생아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

1. 첫째아 : 10만원 상당
2. 둘째아 : 20만원 상당

3. 셋째아 이상 : 30만원 상당

②제1항의 출산육아용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이 관장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둘째 자녀에 관한 사항은 2011. 1. 1. 출생자녀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선군공고 제2011-210호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
입법예고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4. 1.

정 선 군 수

1. 조례명 :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저상위조례의 제명 변경 및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금지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 세 자녀 이상”을 “출생아”로 함.

(제명, 제1조,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지원기준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60일 이내에 양육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정한다.”로 함.

(제3조 ③항)

- 지원방법은 조례제11조②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다.(제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 258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전화 560-2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가.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 1부.

나. 관계법령발췌서 1부.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세 자녀 이상 세대”를 “정선군 출생아”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60일 이내에 양육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제목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신청서”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목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지원 대장”을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선군공고 제2011-211호

공 시 송 달

성 명 : 김 석 천 외 7인(“별첨”)

주소또는거소 : “별첨”

서류의 명칭 : 2011년도 3월중 수시분(자동차,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류의 내용 : 2011년도 3월중 수시분(자동차,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위의 서류를 2011년 03월 10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변경된 납기일인 2011년 04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4. 01.

정 선 군 수

공시송달 내역서

발송지	개인(법인)명	과세물건	공고사유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898 (2통4반)	김석천	강원80거2627(비영업용, 적재정량:1000) 2월중 말소차량에대한 3월 수시분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84-2 (1통1반)	정재형	10마1471(비영업용, 배기량:2902, 승차정원:9) [차령경감율:40%]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6 (1통1반)	박속희	강원28마5459(비영업용, 배기량:2476, 승차정원:9) 2월중 말소차량에대한 3월 수시분 [차령경감율:5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4-28 (12통5반)	최종수	47우3500(비영업용, 배기량:2476) 2월중 말소차량에대한 3월 수시분 [차령경감율:5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43 (2통4반)	고영년	강원70노2317(비영업용, 배기량:1998, 승차정원:7) [차령경감율:45%]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25-1 (15통3반)	최재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경기여주흥천신근226-2)	수취인미거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760-1 월드프라자 801	(주)나눔	2010년10월귀속((주)나눔) : 근로소득	이사감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760-1 월드프라자 801	(주)나눔	2010년11월귀속((주)나눔) : 근로소득	이사감

정선군공고 제2011-2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록 신용정보 등록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4. 4.

정 선 군 수

1. 제 목 : 공공기록 신용정보 등록 예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1. 04.04 ~ 04.18 (14일간)
3. 공시송달 내 용

지방세기본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결손)자에 대한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등록하고자 예고서를 본인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 당사자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 정선군청 세무회계과(033-560-2293)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대상자
“별첨” .끝.

신용정보 등록대상 예고자 공시송달 명부

일련 번호	납세자명	주 소	건수	반송사유
계	20명		217	
1	케이이엔지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양감면	2	이사감
2	강신행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1	이사불명
3	김월영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	2	수취인부재
4	이한서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	2	폐문부재
5	주식회사해피개발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2가	3	이사불명
6	주식회사선명종합건설	강원도태백시황지동	5	이사불명
7	주식회사대성건설	강원도정선군신동읍	16	이사감
8	최선자	강원도정선군정선읍	4	폐문부재
9	유병갑	강원도정선군신동읍	28	이사감
10	송원영	강원도정선군고한읍	3	이사불명
11	김문섭	강원도영월군영월읍	6	폐문부재
12	김용성	강원도정선군사북읍	7	수취인부재
13	박철진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	6	수취인불명
14	임계토건개발	강원도정선군임계면	18	이사감
15	대진자원개발주식회사	강원도정선군신동읍	2	이사감
16	합자회사주원개발	강원도정선군임계면	23	이사감
17	유종명	강원도정선군정선읍	39	반송함투입
18	주식회사진영건설	강원도정선군사북읍	12	이사감
19	환민종합건설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	13	수취인불명
20	효산의료기(주)	강원도정선군고한읍	25	이사감